

非關稅障壁에 관한 一考察

孫 明 煥*

目次	
I. 序 言	
II. 非關稅障壁의 概念 및 性格	
1. 定義 및 形態分類	1. 非關稅障壁에 대한 GATT 및 UNCTAD의 形態分類
2. 非關稅障壁의 諸特性	2. 主要 非關稅障壁의 內容 및 經 濟的效果
III. 非關稅障壁의 主要形態別 內容 및 그 效果分析	IV. 結 言

I. 序 言

非關稅障壁(Non-Tariff Barriers) 또는 非關稅歪曲(Non-Tariff Distortion)의 問題는 大體로 國際貿易秩序가 戰後 GATT體制下의 自由貿易主義的 基調로 부터 離脫하여 保護貿易主義 및 地域主義의 傾向이 高潮되기 시작한 1960年代 後半서부터 급격히 國際貿易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論議의 對象으로 浮上하였으며, 오늘날 이 非關稅障壁問題는 世界貿易의 自由化가 계속 追求되어지는 限 解決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고 最終的인 課題의 하나로 登場하고 있다.⁽¹⁾

一國의 貿易을 規制하고 또한 國內產業에 영향을 미치는 貿易政策手段을 特의上 關稅와 非關稅措置로 區分할 때 非關稅障壁은 비록 關稅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일찌기 重商主義時代부터 存在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²⁾ 그러나 輸入數量制限, 外換規制 등 오늘날 각국이 빈번히 使用하고 있는 各種의 非關稅貿易制限措置가 本格的으로 援用되게 된 것은 1930年代 世界大恐慌의 時期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1930年에 프랑스가 小麥輸入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輸入割當制는⁽³⁾ 즉각적으로 各國에 보급됨으로써 普遍화되는 등, 大恐慌의 初期에 있어서 많은 國家는 對外貿易을 規制하는手段으로서 關稅보다는 非關稅障壁을 強化하는 方式을 選好하게 되었던 것이다. 當時

* 韓國貿易研究所 首席研究員

(1) 韓國貿易研究所, 「非關稅障壁의 現況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1973, pp.15-20.

(2) 吉村 正晴, 「貿易問題」, 1958, pp.120-121.

(3) C.P. Kindleberger, *International Economics*, 2nd ed., pp.207-8.

이와 같은 非關稅貿易制限措置가 各國에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措置가 關稅變更보다는 行政的으로 더 伸縮性있고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점과 最惠國條約을 체결하고 있던 諸國에 대한 最惠國義務를 回避할 수 있는 方途를 마련해 주었던 점 등에 基因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⁴⁾ 그 후 第2次大戰中과 戰後에도 各種의 非關稅障壁은 더욱 많은 國家에 널리 普及되었다.

이처럼 非關稅障壁은 비단 오늘날에 이르러 비롯된 것은 아니며 과거에도 體制上의 矛盾 및 그 露呈과 더불어 그것을 解決하고 自國의 國內產業을 保護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登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GATT나 UNCTAD 등에서 非關稅障壁이 深刻한 問題로 論議되게 된 背景에는 종래와는 다른 몇 가지의 特殊한 事情이 內在하고 있는 바,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集約될 수 있겠다.

첫째, 戰後 GATT體制에 의한 貿易自由化의 進展가운데서도 括目할만한 成果를 거둔 6回에 걸친 關稅一括引下交涉 특히 Kennedy Round의妥結 結果 1972年까지는 有稅非農產品에 대한 平均關稅率은 美國 9.9%, EEC 8.6%, 英國 10.8%, 日本 10.7%로大幅 切下되지 않을 수 없었고,⁽⁵⁾ 이에 따라 各國은 關稅讓許가 가져올 打擊에서 國內產業을 保護하고 또한 國際收支對策으로서 종래 關稅障壁에 代替하여 各種의 非關稅障壁을 強化하는 事例가 增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關稅水準이 低下됨에 따라 非關稅障壁이 貿易障壁으로서의 意義 및 比重이 종래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도 이에 관한 國際的 論議를 불러일으킨 하나의 要因이라 하겠다.

둘째, 戰後 世界貿易의 秩序回復과 自由化를 위하여 창설된 GATT는 創設當時부터 原則적으로 關稅이 외의 일체의 貿易制限措置를 不法化⁽⁶⁾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ATT規定自體에는 各種의 非關稅障壁을 合法化시키는 例外規定들이 너무 많이 濕存하고 있어 GATT의 「메카니즘」으로 非關稅障壁을 撤廢하기에는 不充分한 점이 많고 또한 非關稅障壁에 관한 GATT의 規定은 實行面에 있어서도 關稅에 관한 規定에 비해 嚴格한 拘束力を 갖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數量制限등 非關稅障壁을 合法화시키는 GATT의 例外規定들중 중요한 것으로는 ① 第12條의 소위 國際收支理由(Balance of Payments Reason)에 의한 輸入制限의 許容 ② 第11條 第2項의 農產物에 대한 特例 ③ 第18條의 特定產業을 保護・育成코자 하는 開發途上

(4) R. Stern, "Tariffs and Other Measures of Trade Control,"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Sep. 1973, p.867.

(5) Robert E. Baldwin, *Non-Tariff Distortions of International Trade*, 1971, p.1.

國에 대한 數量制限의 許容 ④ 第19條의 소위 特定產品의 輸入에 대한 緊急措置條項 (Escape Clause)에 의한 輸量制限의 許容規定등을 들 수 있다.

사실 GATT는 Kennedy Round의 交涉時에 비록 關稅가 대폭적으로 引下되더라도 非關稅障壁의 溫存은 自由貿易을 沮害한다는 認識에서 非關稅障壁의 自由化問題도 交涉對象에 包含시킬 것을 決議하였으나 關稅主義를 標榜한 GATT로서는 이에 관한 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 1967年の 第24次 GATT總會에서 非關稅障壁의 調査·處理를 위한 적절한 機關의 設置를 決議하였고⁽⁷⁾ 이를 GATT의 工產品貿易委員會 (Committee on Trade in Industrial Products)가 本格的으로 취급하게 됨에 따라, 이때부터 非關稅障壁의 문제는 國제적으로 중요한 關心의 對象으로 되었던 것이다.

세째, 非關稅障壁은 특히 開發途上國의 輸出에 보다 深刻한 障碍要因으로 되고 있다는事實認識에 基礎하여 數年來 UNCTAD는 GATT와는 別途로 製品委員會가 중심이 되어 先進諸國의 非關稅障壁에 관한 調査와 그 自由化를 위한 作業을 활발히 展開하여 왔다는 사실이 또한 非關稅障壁問題를 더욱 커다란 論議의 對象으로 登場시기고 있다는 점이다.

先進諸國은 自國產業의 保護를 위하여 흔히 餘他品目보다는 開發途上國의 輸出關心品目인 農產品이나 勞動集約의 工產品에 대하여 數量制限등 각종의 非關稅障壁을 強化하는事例가 頻煩할 뿐 아니라 同一한 非關稅障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不利한 effect가 상대적으로 開發途上國에 더욱 强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非關稅障壁은 특히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보다 深刻한 문제로 擙頭되고 있다.⁽⁸⁾ 한편 前述한 바와 같이 GATT는 1967年부터 非關稅障壁問題를 本格的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나 오늘날 GATT는 그 基本精神自體가 死藏되 다시피 되어 한낱 形式的인 機構로 轉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先進國의 영향력이 絶對的인 GATT內에서 그동안 開發途上國의 貿易擴大를 위한 諸努力은 無視되어 왔었으며 오히려 數年來 先進諸國은 自國의 利害와 관련하여 非關稅障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등을勘案할 때, GATT 스스로가 開發途上國의 利益을 圖謀하는 방향에서 成果있

-
- (6) GATT는 創設當時부터 그 協定文가운데서 割當制 및 輸出入許可 등 각종 數量制限(第11條), 國產品保護를 위한 內國稅調整(第3條), 덤핑防止稅 및 相殺關稅(第6條), 關稅評價制度(第7條), 補助金(第16條), 國營貿易企業(第17條)등이 貿易自由化를 沮害하는 障壁임을 명확히 規定하고 이와 같은 貿易制限措置들을 全廢할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 (7) 이 決議에 따라 最初의 非關稅障壁「리스트」인 GATT, document COM/IND 4(1968. 8. 30)가 發表되었는 바, 이에 의하면 非關稅障壁으로 通報된 것은 總800項目에 達하고 있다. GATT, document L/3298, Dec. 1969, p.1 參照.
 - (8) 非關稅障壁이 實質的으로 開發途上國에 크게 不利한 差別의 性格을 갖는다는 점을 實證的으로 分析한 代表의 論文으로는 Ingo Walter教授의 "Non-Tariff Barriers and the Export Performance of Developing Economie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May 1971을 들 수 있는 바,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詳論할 것임.

게 非關稅障壁의 問題를 취급하리라고 期待하기는 어려운 實情이다.

이와 같은 認識에 基礎하여 UNCTAD는 1968年の 第2次總會에서 GATT와는 別途로 主要先進國이 適用하고 있는 非關稅障壁에 관한 徹底한 調査와 이의 緩和 및 撤廢方案을 摸索할 것을 決議하였고⁽⁹⁾ 이 決議에 따라 製品委員會(Committee on Manufactures)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상당히 廣範圍하고 具體的인 調査가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⁰⁾

叙上한 바와 같이 오늘날 非關稅障壁의 문제는 주로 GATT, UNCTAD 등의 國際機構를 중심으로 하여 活潑히 論議되고 있으며 一般的인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非關稅障壁은 그 自體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의 特殊한 屬性, 이를테면 非關稅障壁의 貿易歪曲의 効果(the trade-distortive impact of nontariff barriers) 測定上の 困難性 등에 緣由하여 關稅의 경우에서와 같은 學問的인 關心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별달리 精密化된 理論의 展開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近來 非關稅障壁의 문제가 自由로운 國際貿易의 擴大를 위한 중요한 課題로서 많은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는 이상, 이에 관한 内容을 究明해 보는 것도 意義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論議의 대체로운 内容을 整理・集約해 봄으로써 非關稅障壁의 概念 및 特性, 그 内容 및 一般的 效果 등을 考察하기로 한다.

II. 非關稅障壁의 概念 및 性格

1. 定義 및 形態分類

흔히 NTB로 略稱되는 非關稅障壁은 그 形態, 性格 및 影響이 极히 複雜・多岐하여 概念을 一義的, 統一的으로 規定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몇 定義와 더불어 形態分類方式을 살펴봄으로써 非關稅障壁에 대한 대체의 概念을 把握해 보기로 한다.

(9) UNCTAD, *Programme for the liberaliz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other non-tariff barriers in developed countries on products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document TD/120/ Supp., Jan. 1972, p.60.

(10) 이를테면 현재까지 document形態로 發表된 UNCTAD의 非關稅障壁에 관한 많은 報告書중 가장 主要한 것으로서는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in developed market-economy countries on selected products or product-groups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document TD/B/C.2/R.2, Feb. 1971 및 *Products or product-groups of export interest to developing countries subject to non-tariff barriers in developed market economy countries*, document TD/B/C.2/R.3, Dec. 1970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Robert E. Baldwin은 「非關稅貿易歪曲政策이란 國際間에 거래되는 財貨 및 用役, 또는 이들 財貨 및 用役의 生產에 사용되는 資源이 世界의 潛在的 實質所得을 감소시키도록 配分되는 일체의 수단(그것이 정부나 민간의 어떤 쪽에 의하여 援用되는가를 不問하고)을 말한다」⁽¹¹⁾고 定義하고 있으나, 그는 또한 스스로 이러한 流의 定義는 理論的으로는妥當한 것이지만 現實的으로는 不適合한 것이며 따라서 國際貿易을 實質的으로 歪曲시키는 그러한 手段만을 非關稅障壁의 範疇에 넣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指摘하고 있다.

한편 Robert E. Baldwin은 非關稅貿易歪曲政策의 주된 形態를 12가지 範疇로 分類하고 있는 바, (1) 「쿼타」 및 制限的 國營貿易政策 (2) 輸出補助金 (3) 差別的인 政府 및 民間購買政策 (4) 選別的인 間接稅 (5) 選別的인 國內補助金 및 援助 (6) 制限的 通關節次 (7) 反「dumping」規制 (8) 制限的인 行政 및 技術上의 規制 (9) 制限的 事業慣行 (10) 外國人投資에 대한 規制 (11) 制限的인 移民受入政策 (12) 選別的인 金融統制와 差別的인 換率政策으로의 分類가 그것이다.⁽¹²⁾

다음으로 Ingo Walter는 非關稅障壁이란 「國際貿易의 規模, 方向, 商品構成을 歪曲시키는 작용을 하는 政府의 모든 政策과 慣行을 包括的으로 指稱하는 것」⁽¹³⁾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는 이어 非關稅障壁의 內容把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範疇別로 그 形態를 分類하여 보는 것이 有用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1) 「쿼타」, 輸入競爭產業에 대한 補助金, 可變課徵金과 같이 貿易政策手段으로서一般的으로 援用되고 있는 것 (2) 包裝 및 標札規定, 衛生規定, 關稅評價 및 分類慣行과 같이 貿易規制의in 意圖下에 때때로 사용되는 것 (3) 特定 形態의 國內消費稅나 政府獨占과 같이 대체로 貿易以外의 政策目標를 추구하는 과정상 우발적으로 貿易制限的效果를 가지는 것 등으로의 分類가 그것이다. 또한 그는 分析的인 目的을 위해서는 NTB를 量的 輸入統制에서와 같이 特定商品에만 關係되는 것과 政府購買에서와 같이 廣範圍한 商品에 걸쳐 있는 것으로 分類해보는 것도 권장할만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¹⁴⁾

끝으로 小島 清은 非關稅障壁은 「世界의 自由로운 貿易을 沮害하거나 교란하는, 關稅이 외의 方法으로 政府가 國產品과 外國產品(또는 國內市場과 外國市場)을 差別하는 직접, 간접의 選別의in 規制」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¹⁵⁾

또한 小島 清은 NTB를 直接的 NTB와 派生的 NTB로 大別한 후 이를 다시 다음과 같

(11) Robert E. Baldwin, *op. cit.*, p.5.

(12) *Ibid.*, pp.11-2.

(13) Ingo Walter, *op. cit.*, pp.195-6.

(14) *Ibid.*, p.196.

(15) 小島 清, 小宮隆太郎編, 「日本の 非關稅障壁」1972, p.4.

❶ 分類하고 있다. ⁽¹⁶⁾

I. 直接的 NTB

1. 直接的 輸入NTB: ① 殘存輸入制限 ② 國營貿易 ③ 輸入割當制 및 輸入承認制 ④ 輸入標準外決濟制 ⑤ 輸入擔保金制度

2. 直接的 輸出NTB: ① 輸出優待稅制 ② 輸出優待金利 ③ 輸出長期延拂信用 ④ 造船利子支給 ⑤ 輸出自律規制

II. 派生的 NTB(貿易規制를 直接目的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政策目的을 위하여 도입된 規制가 派生의으로 貿易沮害效果를 갖는 것)

① 內國消費稅 ② 政府調達 ③ 關稅評價 ④ 工業標準 및 安全基準 ⑤ 家畜傳染病豫防 및 植物防疫法 ⑥ 食品衛生法 ⑦ 計量法 ⑧ 行政指導 ⑨ 反「dumping」規制 및 相殺關稅

이처럼 非關稅障壁에 대한 定義는 한마디로 매우 抽象의인 것이며, 形態 또한 매우 雜複・多樣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措置가 非關稅障壁의 範疇에 屬하는가 하는 判定基準내지 概念자체가 立場에 따라 서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素地가 排除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¹⁷⁾

어떻든 以上에서의 叙述을 集約하면 輸入許可量을 量의으로 制限하거나 또는 外國의 輸出業者나 國內輸入業者에게 「코스트」 및 危險을 증가시킴으로써 國內의 輸入量을 節減시키고 輸入價格을 引上시킬 目的下에서 실시되는 關稅이외의 모든 障壁을 非關稅障壁으로 概念지울 수 있을 것이다. 換言하면 關稅이외의 모든 貿易規制는 그 主體가 政府 또는 民間이냐를 不問하고, 또한 GATT의 規定 및 國際協定에서 認定되고 있는가의 與否에 관계없이 그것이 貿易制限의 意圖를 內包하고 있는 限 非關稅障壁으로 規定지울 수 있겠다.

2. 非關稅障壁의 諸特性

1) 貿易制限的效果測定上의 困難性

關稅의 경우와는 달리 非關稅障壁의 貿易制限的效果를 綜合的으로 또는 個別品目別로 數量化하여 測定해내는 일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判明되고 있다. ⁽¹⁸⁾ 왜냐하면 어떤 類型의 非關稅障壁은 單一品目群에만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어떤 것은 全品目 또

(16) 同書, pp.8-33.

(17) 예컨대 輸入國의 工業標準, 安全基準, 食品衛生法 등은 輸出國에 입장에서는 그들의 수출에 종대한 障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非關稅障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輸入國으로서는 설사 그것들이 輸出國에 不便(inconvenience)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貿易制限의 意圖와는 無關한 國內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非關稅障壁으로 보는 것은妥當치 못하다는相反된 주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8) Ingo Walter, *op. cit.*, pp.196-7.

는 輸入全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關稅의 影響까지 複合하게 되면 貿易制限的 効果의 歸屬狀態와 그 depth를 정확히 判定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非關稅障壁은 時間에 따라 매우 可變的이거나 關係當局의 態意에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은밀히 適用되는 것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資料의 利用可能性은 實際적으로 극히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물론 非關稅障壁의 類型중에는 그 1次的인 効果가 비교적 明確한 것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固定費用을 負擔시키는 形態의 非關稅障壁 예컨대 輸入附加金은 不確實性(uncertainty)의 要因을 考慮外로 할 경우 關稅와 類似하게 작용하며, 輸入競爭產業에 대한 選別的인 補助金의 効果는 貿易量과 國民經濟의 構造面에서는 關稅와 類似하지만 財政, 國內物價, 實効保護, 需要水準에서는 關稅와 判異하다는 것이다. 특히 數量制限的 非關稅障壁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輸入「쿼타」의 効果에 관한 理論은 상당한 정도로 進展되고 있다.⁽¹⁹⁾

이처럼 비교적 貿易制限的 効果가 명확한 NTB를 대상으로 美國과 英國의 諸產業에 대한 그 効果를 實効保護率의 概念으로 計測하는 作業이 廣範圍하게 試圖된 바도 있었다.⁽²⁰⁾

그러나 모든 形態의 非關稅障壁에 있어서 그 貿易制限的 効果가 數量化될 수 없는 것만은 分明한 사실이다. 즉 關稅評價, 保健, 安全基準 등에 대한 行政的 規制는 高率關稅에 못지 않는 貿易障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効果를 計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非關稅障壁의 문제가 별달리 學問의인 關心과 討論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非關稅障壁의 바로 이러한 性格에 緣由하는 것이라 하겠다.

2) 複合性

대체로 先進諸國에 있어서 非關稅障壁의 適用 및 運營은 매우 複合的인 性格을 갖는다. 즉 어떤 類型의 것은 본래 法律로서 制定된 것인가 하면 어떤 것은 統一的이고 體系的인 調整도 없이 여러 行政機關의 諸政策에서 派生하여 複合的으로 適用되고 있고 또한 類型마다 그 性質이 매우 多樣하다는 것이 特徵이다. 이러한 側面때문에 많은 국가는 關稅보다는 非關稅障壁을 통하여 그들의 輸入競爭產業에 대한 保護目的을 達하려는 傾向이 있는 바, 그 理由는 그렇게 하면 최소한 공공연한 論難과 嚴密한 調査를 回避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¹⁾

(19) 「쿼타」의 貿易制限的 効果에 관하여는 後述할 것임. 「쿼타」와 關稅와의 同質性에 관한 論文으로는 J. Bhagwati의 "On the Equivalence of Tariffs and Quotas," in R.E. Baldwin et al., *Trade, Growth and the Balance of Payments*, 1965 및 "A Note on the Equivalence of Tariffs and Quota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8 등이 있음.

(20) 이에 대한 자세한 内容은 Robert E. Baldwin, *op. cit.*, p.149-169까지 參照.

(21) Ingo Walter, *op. cit.*, p.197.

3) 不確實性

非關稅障壁의 또 하나의 特性으로서는 情報不足 및 制度의 變則的 運營등에 基因한 不確實性(uncertainty)이 指摘되고 있다.

關聯情報의入手가 充分치 못한 狀態에서 輸出業者로서는 輸入國의 非關稅障壁이 그들의 輸出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制限的일 것인가를 미리 確實하게 判斷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輸入國의 貿易政策은 수시로 아무런 通告 없이 變更될 可能性을 同시 内包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輸出業者에게는 큰 危險負擔이 된다. 이처럼 어떤 形態의 非關稅障壁은 輸出入業者나 關聯流通機構에 不明確性과 流動的 危險負擔을 지워 줌으로써 非關稅障壁의 第1次의인 制限效果를 더욱 強化하는 경향이 있다.⁽²²⁾

4) 開發途上國에 不利한 差別的인 性格

非關稅障壁이 貿易에 미치는 影響은 外觀上으로는 無差別的(nondiscriminatory)인 것 같지만 實事上 開發途上國에 크게 不利하다는 것과 따라서 非關稅障壁問題는 先進國보다는 開發途上國에 훨씬 重要한 意味를 지니게 된다는 점이 Ingo Walter에 의해서 잘 指摘되고 있다. 여기서 非關稅障壁이 實事上 開發途上國에게 보다 不利하게 作用하는 差別的인 性格을 지닌다는 그의 論據는 基本的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實事에 基礎하고 있는 바, 하나는 同一한 非關稅障壁일지라도 그것이 先進國의 輸出보다는 開發途上國의 輸出關心品目에 보다 頻繁하게 適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各種 非關稅障壁이 開發途上國에 미치는 影響의 深刻度가 先進國에 대한 그것에 비하여 不均等한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²³⁾

두 가지의 論據는 開發途上國의 輸出과 관련하여 중요한 意義를 갖는 것이므로 그 具體的인 內容을 以下에서 살펴기로 한다.

가. 相異한 適用頻度

앞서 본 첫번째의 論據를 바꾸어 말하면 가장 頻繁하게 非關稅障壁의 適用對象이 되는 製品 및 半製品을 보면 그것은 畢皆가 國際市場에 있어서 現在 開發途上國이 比較優位를 갖고 있거나 또는 未久에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 品目들이라는 사실이다.

그 實證的인 例로서 17個先進國을 대상으로 이를 국가가 주요 製品 및 半製品의 品目群 輸入에 適用하고 있는 非關稅障壁을 檢討한 결과, 1968年 이를 先進國의 製品 및 半製品 輸入總額 1,280億弗중 28%인 360億弗이 非關稅障壁의 適用을 받고 있음에 반하여 開發途

(22) UNCTAD, *Liberaliz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Part I*, document TD/B/C.2/83, Nov. 1969. p.9.

(23) Ingo Walter, *op. cit.*, pp.197-8.

上國으로 부터 이들 品目的 輸入總額 210億弗中 33%인 70億弗이 非關稅障壁의 適用을 받고 있음이 判明되었다. 즉 이를 바꾸어 말하면 1968年 先進國의 製品 및 半製品의 全體輸入額 가운데 開發途上國으로 부터의 輸入이 占하는 比率은 16.5%인 것에 반하여 非關稅障壁의 適用을 받은 輸入總額중 開發途上國으로 부터의 輸入額이 占하는 比率은 20.9%가 되는 셈이며, 이로서 先進諸國은 開發途上國으로 부터의 輸入에 더욱 頻繁하게 非關稅障壁을 適用하고 있다는 사실이 證明되고 있다.⁽²⁴⁾ 이를 國別로 보면 <表 1>에서와 같은데, 특히 日本, 美國, 프랑스 등에 있어 開發途上國으로 부터의 輸入에 대한 非關稅障壁의 適

<表 1>

NTB의 適用對象인 開發途上國으로 부터의 輸入(1968年)

(單位 : %)

輸入國	總輸入中 開途國의 「쉐어」		NTB適用輸 入中開途 國의「쉐어」	輸入國	總輸入中 開途國의 「쉐어」		NTB適用輸 入中開途 國의「쉐어」
	開途 國의 「쉐어」	總輸入 中開途 國의 「쉐어」			開途 國의 「쉐어」	總輸入 中開途 國의 「쉐어」	
美 國	18.6	23.5	奧 斯 特 利 亞	3.0	3.5		
利 比 利 亞 國	6.8	3.5	斯 威 斯	5.5	13.1		
法 國	12.5	7.9	E E C	7.5	13.7		
德 國	10.8	2.0	벨지운·룩셈부르크	15.0	27.6		
日 本	43.2	58.4	法 蘭 西 斯	17.9	37.9		
英 國	22.9	13.9	西 獨	17.0	6.9		
韓 國	7.5	2.2	伊 爾 蘭 亞	25.0	4.3		
新 西 蘭	9.1	6.2	愛 爾 蘭 德	11.7	4.3		
芬 蘭	7.2	4.7	合 計	16.5	20.9		
丹 麥	2.7	6.8					

資料 :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1, p. 201

用頻度가 높음을 알 수 있다.

非關稅障壁은 상대적으로 開發途上國이 比較優位를 갖는 商品에 더 자주 適用되는 傾向이 있다는 事實에 관한 또 하나의 實證的인 分析事例로서는 開發途上國이 比較優位를 갖는다고 보여지는 60個의 品目群(SITC 3digit 基準)을 對象으로 이들 品目的 競爭力水準(Competitive Position)과 非關稅障壁適用性向(NTB Factor)을 각각 推定하여 兩者間의 順位相關係數를 算出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分析作業의 結果, 開發途上國이 이들 製品 및 半製品의 生產에서 갖는 國際競爭力水準과 NTB適用의 強度와는 대체로 相應하고 있다는 結論이 導出되고 있다.⁽²⁵⁾

나. 不均等한 影響

(24) *Ibid.*, pp.200-1.

(25) *Ibid.*, p.202 및 p.204의 <表 3> 參照.

各種의 非關稅障壁은 先進國보다는 상대적으로 開發途上國側에 더 큰 負擔이 되어 不均等한 影響力を 갖는 경향이 있다는 두번째의 論據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事實認識에 基礎하고 있다. ⁽²⁶⁾

즉 그것은 ① 혼히 開發途上國의 供給者는 體質的으로 先進國의 競爭業者보다 非關稅障壁에 對處하여 필요한 調整을 행하는 能力이 훨씬不足하다는 것 ② 開發途上國은 일반적으로 代替生產의 可能성이 크게 制限되어 있거나 또는 없다는 것 ③ 開發途上國은 現存非關稅障壁의 性質과 運用方式을 정확히 判斷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情報蒐集能力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혼히 誤謬나 값비싼 供給反應을 일으켜서 결국 輸出意慾이 萎縮되기가 일쑤라는 것 ④ 어떤 品目의 輸入에는 특히 그것이 健康 및 品質規制와 관련될 경우에는 開發途上國側에 극히 까다로운 節次나 標準規格이 要求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⑤ 과거 關稅引下交涉過程에서 그려했듯이 非關稅障壁問題를 다루는 國際的인 論議席上에서 —— 예컨대 GATT에서의 論議와 같이 —— 開發途上國의 利益은 副次的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輸入許可는 傳統的인 供給源과 長期的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輸入業者에게 우선적으로 發給되는 것이 通常의 이어서 開發途上國의 새로운 供給業者の 市場接近이 制約되는 경향이 있다. 輸入「쿼타」의 경우, 「쿼타」量을 발표하지 않거나 또는 輸入許可量을 수시로 變動시킨다든가 하여 「쿼타」의 效率的인 配分을 곤란케하는 등 여러 가지 制度運營上의 行政的 技巧는 혼히 開發途上國의 供給業者로 하여금 「쿼타」量의 消盡조차 不可能하게 하여 결국 그들의 安定的인 市場接近努力을 挫折시키기도 한다. 또한 開發途上國의 輸出關心品目인 織物類, 編物製品, 電子部品 등에 그 適用頻度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輸出自律規制에 대해서도 交涉力이 不足한 開發途上國으로서는 그것을 따르는 것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게 된다. 그 외 包裝 및 標札規定, 安全基準, 衛生規則의 경우에도 過多한 包裝 및 「디자인」費用, 關聯規則에 관한 자세한 情報의 不足 등으로 開發途上國에게는 각국의 多樣한 諸規定에 適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두번째의 論據에 관한 分析은 現在로서는 質的인 分析과 直觀的 면 評價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事實로서 立證될 수 있다면 開發途上國은 최소한 特惠關稅制에 관한 論議過程에 있어서 만큼은 說得力있게 그들 輸出에 적용되고 있는 特定非關稅障壁의 特惠的인 緩和要請을 正當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26) *Ibid.*, pp.197-200.

III. 非關稅障壁의 主要形態別 內容 및 그 効果分析

1. 非關稅障壁에 대한 GATT 및 UNCTAD의 形態分類

원래 貿易協商이란 일종의 政治經濟的인 문제인 것이며 따라서 非關稅貿易歪曲措置에 관한 一聯의 規制緩和協商은 既存 및 將次의 새로운 歪曲 緩和에 있어 多邊的 接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²⁷⁾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非關稅障壁은 그 形態와 性格이 极히 複雜·多樣하여서 이에 관한 精密한 調査 및 現象把握은 GATT, UNCTAD 등과 같은 國際機構를 통하여서만이 가장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非關稅障壁에 관한 論議가 주로 GATT, UNCTAD 등의 國際機構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이러한事情에 緣由한 것이다.

GATT 및 UNCTAD의 非關稅障壁에 대한 形態分類方式을 보면, GATT는 6個「그룹」에 속하는 45個形態로⁽²⁸⁾ 그리고 UNCTAD는 3個類型 5個「그룹」에 속하는 38個形態로 각각 分類하고 있다. 이 兩者的 分類方式은 分析目的에 따라 各各 그 나름대로의 長點을 가지고 있어 選別的으로 利用될 수 있겠으나, 특히 UNCTAD의 分類方式이 비교적 體系的이어서 理解하기 쉽고 또한 이런 流로 分類된 形態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많은 分析資料가 있다. 그러므로 以下에서는 便宜上 UNCTAD의 分類方式을 紹介하고, 그에 따른 非關稅障壁의 主要形態에 관한 內容 및 經濟的 效果를 分析하기로 한다.

UNCTAD는 非關稅障壁의 形態를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²⁹⁾

Type I —— 주로 輸入競爭商品을 공급하는 國內供給者를 海外競爭으로 부터 보호하거나(輸入派生的) 또는 海外市場의 擴大를 위하여 國內輸出業者에 대한 支援(輸出派生的)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通商政策的 規制措置

Group A : 주로 貿易의 量的 制限과 관련된 措置

- (1) 輸入「쿼터」; 「글로벌」(global)한 것
- (2) 輸入「쿼터」; 雙務的(bilateral or selective)인 것
- (3) 輸入許可制; 任意的 및 制限的(discretionary and restrictive)인 것
- (4) 輸入許可制; 自動的(liberal)인 것

(27) Robert E. Baldwin, *op. cit.*, pp.25-6.

(28) 그 구체적인 내용은 大韓貿易振興公社, 「各國의 非關稅障壁」, 1971, pp.226-7을 參照.

(29) UNCTAD, *Liberaliz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document TD/B/C.2/R.1, Dec. 1969, pp.10-12.

- (5) 輸出自律規制；雙務의 및 多者間의 것
- (6) 輸入禁止；通關保留
- (7) 輸入禁止；原產地別로 選別的인 것
- (8) 國營貿易
- (9) 公共機關에 의한 國產品優先購買慣行
- (10) 國產化比率에 관한 規定
- (11) 輸出制限

Group B: 주로 費用 및 價格操作과 관련된 措置

- (1) 可變課徵金 및 輸入附加稅(最低輸入價格制度 및 關稅割當 포함)
- (2) 事前輸入預置金制度
- (3) 「덤핑」防止稅와 相計關稅制度
- (4) 輸入業者에 대한 貸出制限등 財政金融上의 制限措置
- (5) 輸入競爭產業에 대한 租稅上의 特惠措置
- (6) 輸入競爭產業에 대한 直·間接의 補助金制度
- (7) 國內輸送運賃의 差別適用

Type II——通商政策과는 直接의인 관계이 없으나 輸入制限 또는 輸出促進을 目的으로
隨時로 사용되는 規制措置

Group A: 주로 貿易의 量的 制限과 관련된 措置

- (1) 通信手段에 의한 廣告活動制限
- (2) 數量的「마아케팅」規制

Group B: 주로 費用 및 價格操作과 관련된 措置

- (1) 原產地表示規則을 포함한 包裝 및 標札規定
- (2) 保健 및 衛生規定과 品質標準
- (3) 安全 및 工業標準에 관한 規定
- (4) 國境稅調整
- (5) 物品稅(消費稅)
- (6) 通關節次와 그에 관련된 慣行
- (7) 關稅評價節次와 그에 관련된 慣行
- (8) 關稅分類節次와 그에 관련된 慣行

Type III——대체로 國內產業의 保護目的과는 無關하게 실시되지만 불가피하게 貿易部

門에 制限의 要因을 結果하는 措置

- (1) 政府專賣制度
- (2) 政府의 構造別, 地域別 開發政策上의 規制措置
- (3) 國際收支改善을 위한 政府의 規制措置
- (4) 租稅制度上의 變更措置
- (5) 社會保障制度 및 關聯事業計劃의 變更措置
- (6) 減價償却方法의 變更措置
- (7) 政府支援의 研究開發事業과 國防事業에서 派生한 諸影響
- (8) 政府의 國產品購買에 의하여 誘導된 比例效果
- (9) 度量衡標準의 變更措置
- (10) 海外輸送運賃의 差別適用

2. 主要 非關稅障壁의 內容 및 經濟的 效果

1) 輸入「쿼타」(Import Quota)

輸入「쿼타」는 輸入品의 價格과는 상관없이 國內市場에 搬入되는 輸入量(또는 輸入額)에 直接的인 限度를 設定함으로써 一國의 輸入量을 制限하는 諸措置를 말한다.

이러한 輸入「쿼타」는 통상 輸入國에 있어서 當該品目的 價格과 生產水準을 높이는 반면 輸入需要를 制限하는 經濟的效果를 갖는다. 이는 關稅賦課와 매우 類似한 效果를 갖는 것으로서 輸入「쿼타」의 適用時 輸入「오파」價格과 國內價格과의 差額을 關稅相當額(equivalent tariff)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關稅相當額은 實際關稅와는 달리 輸入國政府에 의해 徵收되지는 않는다.⁽³⁰⁾

이 輸入「쿼타」는 가장 明確한 非關稅障壁일 뿐 아니라 關稅보다도 脣선 貿易制限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輸入「쿼타」는 協定關稅率로서는 所期의 國內產業保護目的을 达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서 輸入量을 一定水準에 固定시킴으로써 需要增加에 따라 輸入이 增加할 수 없도록 하여 따라서 輸出國의 새로운 成長產業이 市場占據率을 增大하는 데에 絶對的인 限界를 設定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輸入「쿼타」는 國家政策 또는 國際收支改善目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國別로 差別的인 輸入을 피하는 것이 可能하며 더우기 「쿼타」輸入은 價格「메카니즘」보다는 行政的 決定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一般的의어서 뜻하지 않은 差別待遇를 結果할 可能성이 關稅보다는 脣선 많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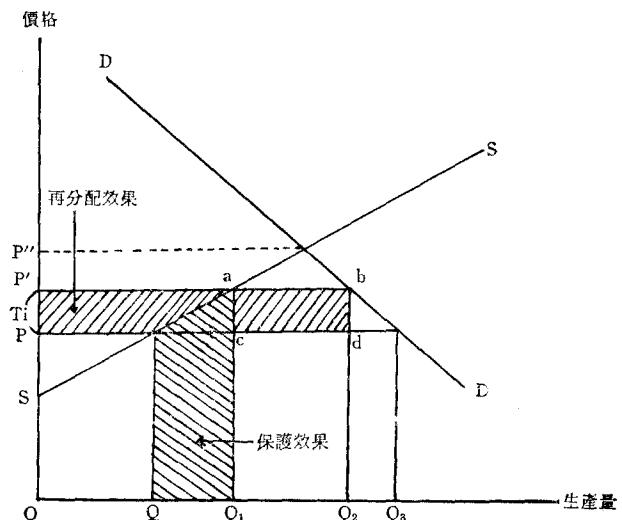
(30) UNCTAD, document TD/B/C.2/83, p.6.

輸入「쿼타」가 關稅와 代替的 또는 補完의 貿易障壁으로 널리 사용되는 傾向은 주로 上述한 바와 같은 貿易制限效果를 보다 容易하게 이를 수 있다는 것에 緣由하는 것이다. 즉 輸入「쿼타」는 적은 費用으로 迅速・正確한 政策效果를 期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有事時에 對備하여 留保(in reserve)될 수도 있으며 또한 「쿼타」適用의 威脅을 통한 輸出國의 自律規制促求의 例에서 처럼 實體적인 適用없이도 輸入減少의 effect를 거둘 수 있다는 便利한 점이 있다. 더우기 「쿼타」限度를 發表하지 않는 등의 行政的인 技巧를 통하여 「쿼타」量의 消盡을 불가능케 할 수도 있는 것이다.⁽³¹⁾

어떻든 輸入「쿼타」의 經濟的 effect는 關稅에 관한 部分均衡의 分析과 마찬가지의 接近을 통하여 把握될 수 있겠다.⁽³²⁾ 즉 <圖 1>에서와 같이 需要와 供給曲線이 完全히 非彈力的

<圖 1>

「쿼타」와 關稅의 經濟的 效果



이 아닌 特定의 財貨에 대하여 比較劣位를 갖고 있는 輸入國이 國內產業保護를 위해서는 國際收支均衡을 위해서는 종래 輸入量 Q_3 를 줄이기 위해 Q_1Q_2 만큼의 輸入「쿼타」量을 策定하였을 경우, 이때 輸入「쿼타」의 經濟的 effect는 마치 T_i 의 關稅를 부과하였을 경우와 同一하다. 다만 다른 점은 關稅賦課의 경우 □abdc만큼의 歲入效果가 있는데 反하여 輸入「쿼타」의 경우에는 그것이 없다는 점일 것이다.

가. 「글로벌・쿼타」(Global Quota)⁽³³⁾

(31) UNCTAD, document TD/B/C.2/R.1, p.10.

(32) C.P. Kindleberger, *op. cit.*, pp.206-7 및 pp.182-3 參照.

(33) UNCTAD, document TD/B/C.2/83, pp.7-8.

이는 數個 또는 모든 國家로 부터의 特定商品의 輸入量을 數量 또는 價額基準으로 一定期間동안 固定시킴으로써 輸入을 制限하는 것이다.

輸入「쿼타」의 경우 輸入需要量이 「쿼타」量을 超過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에는 「쿼타」配定 또는 「쿼타」輸入許可方法에 있어서 어떤 基準이 要求되는데 이는 대체로 과거의 「쿼타」輸入許可實績 또는 先着順을 基準으로 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이처럼 과거의 輸入 또는 「쿼타」輸入許可實績을 基準으로 삼는 경우는 「글로벌·쿼타」도 결과적으로 新規供給者를 差別하는 것이 되며 특히 許可를 받은 輸入業者가 特定의 海外供給業者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크게 된다. 또한 이 「쿼타」制의 實際 運用에 있어 몇몇의 特定輸出國 및 輸出業者에게만 適用하고 特惠條約을 締結한 國家는 適用對象에서 除外함으로써, 名目上으로만 「글로벌·쿼타」制이고 實質的으로는 아닌 경우도許多하다.

이와 같은 「쿼타」制의 差別的인 運用은 當該品目을 보다 비싼 값으로 輸入하게 되어 國內消費者를 희생시키게 된다.

나. 双務的「쿼타」(Bilateral Quata)⁽³⁴⁾

双務的「쿼타」는 그 자체가 特定 國家 또는 供給者를 差別할 수 있다는 의미를 内包하고 있어서 「글로벌·쿼타」보다 差別的인 性格이 훨씬 强하다는 것이 特徵이다. 즉 이것은 特定品目的 輸入 또는 特定國家群으로 부터의 輸入은 그 適用이 除外되는 반면, 어떤 종류의 輸入에 대해서는 더욱 制限의 輸入量規制를 行함으로써 差別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双務的「쿼타」는 어떤 國家로 부터의 急速한 輸入增大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므로 低勞債을 基盤으로 新規輸出去來先을 開拓하려는 開發途上國에게는 不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双務的「쿼타」는 通常 互惠協商을 통하여 成立되는 바, 交渉能力이 弱하고 相互讓許(reciprocal concessions)로서 相對方에게 提示할 事項이 별달리 없는 開發途上國으로서는 이러한 協商에서 상대적으로 不利한 立場에 處하기 마련이다.

双務的「쿼타」의 代表的인 例는 長期綿織物協定(The Long-term Arrangement on Cotton Textiles)을 들 수 있겠다.

2) 輸入許可制(Import Licencing)⁽³⁵⁾

「쿼타」는 일반적으로 輸入許可書의 發給에 의해서 運營되고 있어 輸入許可制와 「쿼타」制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쿼타」量의 完全消盡을 故意的으로 防害하는

(34) *Ibid.*, p.8.

(35) *Ibid.*, p.9 및 UNCTAD document TD/B/C.2/R.1, pp.14-5.

方式으로 輸入許可書가 發給되는 事例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許可節次 그 자체가 輸入障壁으로 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두가지로 大別된다.

가. 任意的 許可制(Discretionary Licencing)

이는 事前에 아무런 「쿼타」量의 策定없이 輸入許可가 發給되는 것으로서 輸入許容量은 管轄當局의 裁量에 따라 任意의이다.

이 制度의 가장 有害한 要素는 바로 不確實性에 있다. 즉 「쿼타」配定이 있는지의 與否, 申請한 許可의 承認與否 또는 輸入許容量의 變更與否 등등이 모두 不確實한 것으로서 任意的 許可制의 이러한 不確實性은 去來關聯者들의 事業計劃樹立을 매우 어렵게 한다. 따라서 任意的 許可制는 不確實性의 要素가 빽을 경우에는 「쿼타」制보다도 더 貿易制限的效果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어떻든 任意的 許可制는 다음의 自動的 許可制보다는 더 差別的이며 더 貿易制限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任意的 許可制는 「쿼타」와 類似한 價格效果를 갖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나. 自動的 許可制(Automatic Licencing)

이는 輸入規制의 目的보다는 주로 統計的 目的이나 公安, 外換規制, 保健 및 安全 등 的 理由로 實시되는 것으로서, 輸入許可가 비교적 自由롭게 그리고 申請만으로 거의 自動的으로 行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制度의 自動性의 정도는 實施目的에 따라 나락마다 매우 다르다.

그러나 自動的 訸可制도 주로 運用上의 여러가지 行政的・技術的 節次때문에 貿易制限의 效果를 가진다. 즉 許可取得까지의 諸費用외에도 許可發給時間의 遲延, 許可有效期間의 短期, 再輸出條件의 許可, 許可申請時 最終消費者의 確認要求, 再販賣禁止條項(no-resale clauses) 등등은 當該 輸出入業者는 물론 國內流通機構上의 關係者 및 最終消費者에게 不確實性과 危險負擔을 加함으로써 비록 그 程度는 多樣하지만 貿易制限的效果를 惹起시킨다.

3) 其他의 數量制限措置

가. 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s)

輸出自律規制란 輸入國의 輸入制限措置를 未然에 回避할 목적으로 輸出國 스스로 輸出을 制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形式上으로는 輸出國이 輸出을 自律的으로 規制한다고 하지만 그 裏面에는 輸出國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輸入國側으로 부터의 壓力이 公公然하게 또는 暗暗裡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의어서, 實質的으로는 輸入「쿼타」와 별로 다를 바 없으며 輸入「쿼타」의 새로운 變形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輸入國側으로 부터의 壓力 없이 輸出國內의 輸出過當競爭을 抑制하기 위한 目的만으로 輸出自律規制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³⁶⁾

따라서 輸出自律規制는 「쿼타」制에 못지 않게 貿易制限의 效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輸出國의 입장에서 短期的으로 보면 輸出自律規制가 항상 不利한 것만은 아니다. 즉 輸出國은 이로써 國內 同種輸出企業間의 過當競爭을 防止하여 秩序 있는 輸出(orderly marketing)을 꾀할 수 있다. 또한 收入效果(revenue effect)의 歸屬이라는 觀點에서 보면 關稅賦課의 경우 징수된 關稅는 輸入國政府의 收入이 되며 輸入「쿼타」의 경우 關稅相當額은 輸入國의 輸入業者에 歸屬되는 것에 反하여, 輸出自律規制의 경우에는 그것이 輸出業者에게 回收되므로 輸出國에 有利한 面도 있다.

近來 美國等 先進國들은 開發途上國이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 織維類 등의 勞動集約的 輕工業製品에 대하여 輸出自律規制를 要求하는 事例가 점차 頻繁해지는 경향이 있다.

나. 國營貿易(State Trading)

國營貿易의 特徵은 日常的인 運營過程에서 輸入을 差別할 수 있어 輸入制限의 效果가 보다 任意的이고 直接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國營貿易企業은 國內市場狀態에 따라 輸入量을 任意的으로 變更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國內市場에 대한 輸入商品의 再販賣價格을 종래의 價格水準 또는 그 以上的 水準으로 策定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海外供給者를 差別할 수도 있기 때문에, 輸入量을 減少시키거나 또는 價格調整을 통하여 國내供給者를 任意대로 保護할 수 있는 것이다. ⁽³⁷⁾

한편 國營貿易의 經濟的 效果는 그것이 財政的인 理由보다는 國內產業의 保護目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흔히 輸入「쿼타」와 매우 類似한 反面, 그것이 財政收入을 增大시킬 目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輸入「쿼타」보다는 오히려 高率의 關稅와 더 비슷한 效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³⁸⁾

다. 國產品優先購買慣行(Domestic Procurement Practices)

이는 주로 政府 또는 政府機關내지 公共機關이 輸入商品보다는 自國商品을 優先的으로 購買托록 하는 慣行 및 奨勵制度를 말한다. 政府가 輸入品을 差別하는 購買慣行은 사실상 모든 先進諸國에 있어 公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실시되고 있는 바, 그 代表的인 例로서는 1933年の Buy American 法을 들 수 있다.

政府購買機關은 購買行爲에 있어 幫派한 裁量權을 갖고 있기 때문에 國내供給者에게 任

(36) 小島 清, 太宮隆太郎編, 前掲書, pp.248-9.

(37) UNCTAD, document TD/B/C.2/R.1, p.16-7.

(38) Robert E. Baldwin, *op. cit.*, p.34.

意로 特惠를 줄 수 있다. 즉 國內供給者에게만 發注를 限定하거나, 購買機關과 國內輸入競爭供給者와 隨意契約을 체결하거나, 海外供給者에게는 入札情報의 制限하거나, 發注期間을 短期로 策定하거나 또는 海外供給者에게는 嚴格한 應札資格 및 要求條件를 내세우거나 하는 등의 方法을 통하여 海外供給業者를 差別함으로써 國內供給者를 保護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海外供給者가운데서도 特定의 供給者에게 상대적인 特惠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國產品優先購買慣行의 貿易制限的效果를 가짐은 물론이지만 특히 海外情報에精通하지 못하고 適應力이 貧弱한 開發途上國의 供給者에게는 더욱 差別的인 貿易制限效果를 미친다고 하겠다.⁽³⁹⁾

4) 可變課徵金(Variable Levies)

可變課徵金制度는 共同農業政策의 一環으로서 EEC에 의해 代表的으로 實施되고 있는 바, 이는 輸入量 또는 輸入價格의 變動狀況에 따라 任意로 課徵金을 賦課함으로써 輸入量을 調整하여 農產物의 域內價格을 一定水準以上으로 維持시키려는 制度이다.⁽⁴⁰⁾ 그런데 EEC의 共同農業政策은 特定品目에 관하여 一定率의 自給度達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

따라서 可變課徵金制度는 域內供給不足分을 充當해주는 輸入量을 許容하고 있어 形式上 매우 制限的인 것인지만 그러나 明白한 數量制限規定이 없다는 理由만으로 「쿼타」보다 더 任意的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또한 可變課徵金은 保護的인 効果외에 副次的 効果를 갖고 있다. 그것은 可變課徵金은 그 自體의 性格上 國內市場狀況의 如何에 따라서 隨時로 變更될 要素를 항상 內包하는 것이어서 海外供給者에게 不確實性의 危險을 지워 준다는 것이다.

5) 事前輸入預置金制, 「dump」防止稅 및 相計關稅

가. 事前輸入預置金制(Advance Deposit Requirements)

이것은 1968年初에 일종의 國際收支改善措置로서 英國에서 처음으로 實시된 것으로, 輸入許可申請時 一定額의 輸入擔保金을 預置토록 하는 것이다.

同制度는 輸入業者の 資金負擔을 加重시키고 輸入「dump」를 增加시킴으로써 輸入을 制限하는 効果를 가지는 바, 그 輸入制限效果의 크기는 擔保金預置率水準, 預置期間 및 輸出國의 一般利子率에 의해 달라진다. 즉 輸入額에 대한 擔保要求率이 높을수록, 預置期間이 長期일수록 그리고 輸出國의 一般利子率이 높을수록 輸入制限的 効果는 커지기 마련

(39) UNCTAD, document TD/B/C.2/R.1, pp.17-20.

(40) *Ibid.*, p.22.

이다.

나. 「덤핑」防止稅(Anti-dumping Duties) 및 相計關稅(Countervailing Charges)

「덤핑」防止稅와 相計關稅는 當事國間의 交易에 있어 對等한 條件下에서 競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주어진 與件下에서 特定財貨에 대하여 當初 A 國이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었으나 交易相對國인 B 國이 그 財貨를 不當하게 廉價로 輸出하거나 또는 그 財貨의 生產 및 輸出에 대한 補助金을 支給함으로써 人爲的으로 B 國의 比較優位가 造作될 경우 A 國은 이에 대한 對應措置로서 「덤핑」防止稅 또는 相計關稅를 賦課하여相互 對等한 位置에서 競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制度이다.

「덤핑」防止稅의 경우 論難의 對象이 되는 것은 「덤핑」의 定義에 관한 것이다. GATT 協定文에는 「一國의 產品이 正常的인 價格(normal price)以下로 輸入되어 輸入國의 確立된 產業에 實質的인 損害(material injury)를 주거나 또는 損害를 줄 우려가 있고 또한 國內 產業의 確立을 實質的으로 遲延시킨 때에는」⁽⁴¹⁾ 「덤핑」防止稅를 賦課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그 判定基準이 明確치 못하다.

相計關稅의 경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補助金의 性格 究明의 문제이다. GATT 協定文 第 6 條에는 相計關稅의 發動要件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判斷基準이 分明치 않다. 어떻든 「덤핑」防止稅 및 相計關稅는 모든 先進國에 의해 언제든지 賦課될 수 있는데 이는 開發途上國의 特定商品에 대해 特別한 貿易障壁이 되고 있다.

6) 補助金 (Subsidization)

여기서 補助金은 所得 또는 價格支援을 포함하여 直接 또는 間接으로 自國商品의 輸出을增加시키거나 또는 輸入을 減少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支援되는 政府의 支援金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補助金의 形態는 매우 多樣한데 이는 租稅面, 金融面 및 其他的 補助金으로 分類하여 볼 수 있다. 租稅面의 補助金에는 租稅輕減, 租稅猶豫, 租稅還拂, 租稅特別減免 등이 있으며 財政・金融面의 補助金에는 金融支援, 財政借款擴大, 合作投資支援 등이 있고 그외의 것으로는 財政計劃에 의한 輸出促進 및 運賃割引 등을 들 수 있다.

補助金의 貿易에 미치는 影響은 <圖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2國間貿易에 있어서의 部分均衡分析을 통하여 把握될 수 있겠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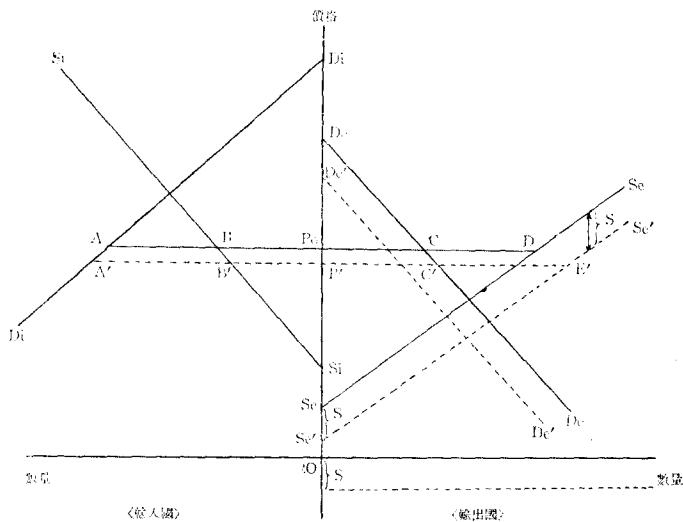
즉 補助金이 없을 경우 均衡價格은 AB와 CE가 같게되는 P_0 의 수준에서 決定되며 이 때의 輸出量은 CE($=AB$)가 된다. 그러나 輸出國의 生產 1單位當 S 단큼의 補助金이 支

(41) GATT協定文 第6條 第1項 參照.

(42) 小島 清, 太宮隆太郎編, 前揭書, pp.61-2.

<圖 2>

貿易에 미치는 補助金의 効果



給되면 供給曲線은 S 만큼 下方으로 移行(shift)하여 S'_e/S'_e' 가 되나 需要曲線은 從前대로여서 均衡價格은 P' 이고 輸出量은 $C'E'(=A'B')$ 로 되어 增大된다. 또한 生產이 아니라 輸出에 대하여 補助金을 주게되면 兩國의 國內價格間에는 S 만큼의 「差」이 있게 되며 이 경우에는 供給曲線과 需要曲線이 모두 S 만큼 下方으로 移行하여 輸出量은 生產에 대한 補助金의 支給보다 더욱 增大된다. 이처럼 補助金의 支給으로서 貿易이 增大한다면 補助金은 貿易에 대한 障壁(barriers)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貿易의 歪曲(distortions)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輸出國의 補助金에 對應하여 輸入國도 補助金을 지급하는 것이 通例이며 이 경우 輸入國의 輸入量은 減少하게 되므로 이는 중대한 貿易障壁이라고 할 수 있다.

GATT의 協定文 第16條에는 補助金을 原則的으로 全廢할 것을 規定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近來 補助金의 形態는 더욱 多樣하게 進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以上에서 우리는 몇 가지 主要 非關稅障壁의 內容을 주로 貿易制限的인 効果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다.

사실 非關稅障壁이 가지는 여러가지 經濟的 効果에 대한 分析은 非關稅障壁 자체가 지니고 있는 諸屬性과 필요한 資料의 不足으로 至難한 것이긴 하지만 一國의 貿易收支, 交易條件, 價格, 館傭, 產業構造, 所得分配 등의 면에서 그것이 가지는 効果는 어느정도 類推될 수 있을 것인 바, 以下에서는 그에 대한 대체적인 內容을 살펴보기로 한다.⁽⁴³⁾

우선 數量的인 輸入制限措置의 諸經濟的 効果에 관하여 보자.

(43) UNCTAD, document TD/B/C.2/R.1, pp.5-9.

特定國에 있어서의 數量的인 輸入制限措置는 輸入量의 減少를 가져와서 그러한 制限이 없었을 경우보다는 높은 國內價格水準을 形成할 것이며, 그러한 制限에 의해 保護를 받고 있는 產業으로 生產資源을 이끌어 들임으로써 當該品目의 國內生產을 增大시킬 것이다. 이때 만약 그 經濟가 完全雇傭狀態에 있으면 保護되고 있는 輸入競爭產業에서의 國內生產增加는 他部門의 生產減少로 이루어질 것이며 만약 不完全競爭狀態에 있으면 生產, 實質所得과 雇傭의 純增加가 발생할 것이다.

동시에 消費者가 支拂한 높은 價格으로 인하여 實質所得은 國內供給者나 輸入業者에게 移轉될 것이다. 또한 政府는 數量制限下에서 發給된 輸入許可書가 國內購買者에게 有料로 交付되지 않는 限 아무런 歲入效果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海外供給者間에 有效競爭狀態가 存在한다면 輸入數量制限으로 輸入國의 貿易收支는 改善될 것이다. 그러나 輸入數量制限으로 保護를 받고 있는 品目이 他產業에 대한 주요한 中間財인 경우에는 價格, 產出量 및 經濟構造에 대한 上記의 數量制限의 效果가 相殺될 런지 또는 더욱 促進될 것인지는 分明치 않다.

一國의 數量制限措置는 輸入國만이 아니라 第3國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輸出國은 우선一定의 輸出必要量의 消化를 위해서 價格引下를 해서라도 다른 海外市場에 輸出하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輸出國의 貿易收支와 交易條件은 惡化될 것이다. 만약 다른 적당한 輸出市場이 없는 경우에는 輸出國은 國內市場에서 脫出口를 찾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輸出量의 減少로 貿易收支는 보다 惡化되고 總體의in 經濟活動도 惡影響을 받게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海外든 國내든 다른 代替市場을 찾지 못하게 되면 當該產業의 生產과 雇傭은 減少하여 在庫는 累積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輸出國에는 不利益이 되며 輸出國은 產業構造調整이라는 欲비싼 代價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費用을 負擔시키는 非關稅措置들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것인 바, 이는 그 效果는 서로 비슷하지만 運用方式이 상당히 多樣한 점이 특징이다.

可變課徵金은 輸入國이 低廉한 輸入價格을 國內商品價格과 同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引上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그 자체가 輸入競爭產業의 價格, 利潤, 生產 및 雇傭을 增大시켜 數量制限과 비슷한 效果를 가진다. 數量制限과 相異한 것은 課徵金이 政府收入이 된다는 점인데, 이 때 徵收된 收入을 輸入競爭產業에 대한 補助金으로 支給하게 되면 2重의in 貿易制限效果를 낳게 된다.

한편 輸入國의 政府는 課徵金率을 계획된 輸入限度量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任意의으로 變更하기 때문에 海外供給者가 輸出增大를 위해 供給價格을 引下해도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며 이런 점에서 課徵金은 數量制限과 類似한 效果를 갖는다. 반면 固定의 非關稅輸入負擔金의 경우에는 關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輸出業者는 그들의 供給價格의 引下를 통해 輸入國의 最終販賣價格의 上昇을 回避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交易量은 별로 큰 變化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輸出入兩國의 產業構造, 訂倣 및 總需要의 變化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供給價格의 引下로 輸出國의 交易條件 및 貿易收支는 惡化할 것이며 輸入國의 그것은 改善될 것이다.

IV. 結　　言

지금까지 우리는 非關稅障壁의 問題가 國際的인 論議의 對象으로 擡頭하게 된 背景, 그리고 非關稅障壁의 概念 및 그것이 지니고 있는 諸屬性을 고찰하고 또한 그것을 主要形態別로 나누어 그 內容 및 經濟的 效果를 分析한 바 있다.

上記의 考察에서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非關稅障壁은 關稅障壁에 代替하여 世界貿易의 自由로운 擴大・發展을 沮害하는 가장 深刻한 障碍要因으로 되고 있으며 國際的인 協商을 통하여 그것의 緩和 내지 撤廢하는 문제는 오늘날 國際貿易에 있어 가장 중요한 政策課題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非關稅障壁問題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에 기초하여 그동안 GATT와 UNCTAD 등에서는 非關稅障壁에 관한 本格的인 調查와 研究를 행하여 왔으나 非關稅障壁 自由化의 문제에 관해서는 數次에 걸친 會議에서一般的인 討議만을 거듭해 왔을 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成果를 거두자 못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이처럼 非關稅障壁의 自由化問題가 實質的인 進展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各國의 利害關係가 서로 複雜하게 얹혀서 相衝되고 있는 國際經濟의 現實에도 일부 原因이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非關稅障壁은 關稅의 경우와는 달리 그 性格自體가 國際的인 協商의 對象으로 되기가 매우 困難하다는 사실에 보다 크게 起因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貿易에 관한 國際協商은 互惠主義에 立脚한 相互讓許를 原則으로 하는 것이 通常의이다. 그런데 非關稅障壁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극히 複雜・多岐한 形態로 存在하며 不確實性의 要因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갖는 諸效果를 正確하게 把握하는 것조차도 어렵지만 그 效果를 計量的으로 測定해 내기는 더욱 어려운 屬性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非關稅障壁의 自由化를 위한 協商過程에 있어 相互間의 讓許程度를 計量的으로 均

一化하여 相互 比較를 可能케 해주는 指標의 設定이 現實的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그 根本的인 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非關稅障壁의 自由化에 있어서는 順調로운 協商을 위한 合理的인 指標를 마련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紧要한 것이다.

이러한 일은 아마도 經濟學者에 의해서만이 可能할 것이며 따라서 非關稅障壁의 經濟的效果에 대한 보다 彻底한 研究와 實證的인 分析을 통하여 加一層 理論의 精密化를 기하는 일은 앞으로 經濟學者들에게 남겨진 課題중의 하나라고 하겠다.